

의안 번호	1520	【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】 심사보고서
----------	------	---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9. 2. 1.(금)
- 나. 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9. 2. 1.(금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8. 2. 15.(금)

2. 제안설명 요지(주민자치국장 조수관)

가. 제안이유

지방자치단체간 “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” 를 구성하고 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제2항에 따라 운영규약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협의회 명칭, 목적, 기능(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)
- 협의회 구성 및 임원, 회의 및 의결(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)
- 사무국 설치 및 업무, 자문위원(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)
- 재원, 회계연도, 예산 및 결산, 감사(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)

다. 근거법규 : 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,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제95조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계화)

- 본 규약안은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운영규약을 정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제2항에 따라 중구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,
- 「지방자치법」 제154조에 따라 협의회 명칭, 처리하는 사무, 조직,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 등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“별 표”

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회원 기초지자체 명단

(2018.10.15. 기준)

구 분	회원 기초자치단체명	
계	총 77개	
수 도 권	서울(15)	종로구, 용산구, 성동구 , 동대문구, 성북구, 강북구, 도봉구, 은평구, 서대문구, 마포구, 양천구 , 강서구, 구로구, 동작구, 관악구
	인천(4)	동구, 미추홀구, 남동구, 옹진군
	경기(21)	수원시, 안양시, 부천시, 광명시, 양주시, 과천시, 의왕시, 구리시, 남양주시, 오산시 , 화성시 , 시흥시, 군포시, 하남시, 파주시, 여주시, 이천시, 용인시, 안성시, 김포시, 광주시
중 부 권	대전(4)	동구, 중구 , 서구, 유성구
	충북(3)	증평군 , 음성군, 괴산군
	충남(6)	공주시, 아산시, 논산시 , 당진시 , 금산군, 부여군
강원(4)		춘천시 , 홍천군 , 양구군, 인제군
영 남 권	부산(3)	북구 , 연제구, 사상구
	울산(5)	울주군 , 중구 , 남구 , 동구 , 북구
	경북(1)	구미시
	경남(2)	창원시 , 거제시
호 남 권	광주(3)	동구 , 남구 , 북구
	전북(4)	전주시 , 김제시, 완주군, 부안군
	전남(2)	담양군 , 영광군

* 진한 글씨가 회장단(임원) 지자체

근거법규

지방자치법

제152조(행정협의회의 구성)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·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, 시·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·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제154조(협의회의 규약)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협의회의 명칭
2.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
3.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
4.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
5.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
6.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95조(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)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, 특수행정수요의 충족, 공공시설의 공동설치, 행정정보의 교환, 행정·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·도로 구성한다.